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바이엘코리아(주) 등 98개사 업체 대표 귀하
(경유)

제목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[목시플록사신, 시프로플록사신 성분 제제(경구, 주사)]

1. 관련 : 의약품안전평가과-3421호 ('21.6.2.)
2. 우리 처(의약품안전평가과)에서는 유럽 의약품청(EMA)의 "목시플록사신" 및 "시프로플록사신"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, 국내·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(안)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.
3. 이에 「약사법」 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(총리령)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, 불임과 같이 "목시플록사신" 및 "시프로플록사신"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하니,
4. 귀 업체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변경명령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방법에 따라 품목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품목허가(신고)증 원본 이면(변경 및 처분사항 등)에 다음과 같이 기재할 것

변경 및 처분사항 등		
연 월 일	내 용	
2021.9.18. ↑ 변경 일자	사용상의 주의사항 ↑ 변경명령 항목 기재	(의약품안전평가과-, 2021.6.18.) ↑ 변경(행정)명령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

※ 별도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설정된 첨가제를 함유한 품목에 대하여는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제17조제1항에 따라 최신의 안전성 관련 사항이 모두 기재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

나. 품목허가(신고)증 원본에 변경명령한 내용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·관리할 것

- 다. 기타 품목허가증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(총리령)[별표 4의3] 제13호를 따를 것
5.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

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처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6. 참고로, 동 기간 내에 상기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란 법령에 의거 행정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허가사항 변경명령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

2. 품목 및 업체 현황

※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(<http://nedrug.mfds.go.kr>)의 상단메뉴 '고시/공고/알림' → '의약품 허가·승인' → '변경지시'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끝.



주무관 김혜인 사무관 문성은 의약품안전평가전결 2021.6.18.
과장 오정원

협조자

시행 의약품안전평가과-3744 (2021. 6. 18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713 팩스번호 043-719-2700 / khi1108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고귀한 희생, 가슴깊이 새깁니다.